

일제시기 民籍簿의 작성과 女性戶主의 성격*

—19세기 濟州 戶籍中草, 光武戶籍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金京蘭**

- | | |
|----------------------------|-------------------------------|
| I. 머리말 | IV. 일본 호적법의 도입과 民籍簿의 女性戶主의 성격 |
| II. 19세기 濟州 戶籍中草에 기재된 女性主戶 | V. 맺음말 |
| III. 대한제국기의 戶口政策과 '女戶'의 증감 |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후기, 대한제국기, 일제시기의 호구정책의 변화를 여성에 의한 호주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부세책임자인 主戶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법적으로 戶內에 성년의 남성이 없는 경우에 존립할 수 있는 제한적, 한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19세기 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중초에도 대체로 관철되어 있었으며, 단성호적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주로 과부·과녀호로 파악되었던 단성현과 대부분 殘·獨戶로 존재했던 하모슬리 호적중초의 女戶는 選政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으며, 각종 호역의 면제대상이기도 했다. 이들 여호가 호를 매개로 한 부세운영에서 각종 부담을 견감받는 호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조선후기의 여성주호를 부세운영과 관련한 호구정책의 산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광무연간의 호적중초에 기재된 여호 역시 호세 확보를 목적으로 했던 대한제국의 호구정책의 추이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4-AM0010).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에 따라 나타난 산물이었다. 제주의 경우 광무호적도 여전히 조선후기의 방법으로 호구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여호의 증감의 원인 및 성격 역시 조선후기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 및 대한제국의 호구정책의 기본틀은 식민지시기에 들어 크게 변화하였다. 1909년 민적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새로운 호구기재 양식에 의거한 민적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때 민적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일본 호적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일본 호적법의 도입과정과 이에 따른 민적부의 단계별 변화에 유의하면서 민적부에 여성호주가 존립할 수 있었던 조건을 검토한 결과 일제시기 여성호주는 父系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인 호에 편입될 여지가 없는 여성들을 편성하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민적부상의 호가 점차 부계혈연 중심의 가부장적인 호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호주는 생성 또는 소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민적부의 여성호주의 모습은 일제가 일본의 호적법을 도입함으로써 재편하려 했던 戶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이었는지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또한 일제시기 민적부상의 여성호주는 조선시대의 여성주호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였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 주제어

女性戶主, 戶籍中草, 戶口政策, 民籍法, 民籍簿

I. 머리말

18·19세기 제주 대정현에서 작성된 戶籍中草가 현재 다수 남아 있다.¹⁾ 호적중초는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중간 산물로서 面里별로 작성되었다.²⁾ 특히 대정현 하모슬리에는 19세기 호적중초와 더불어 대한제국기의 光武戶籍中草, 일제시기에 작성된 民籍簿가 같이 남아 있다. 따라서 조선 및 대한제국기, 일제시기의 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크다.

최근 호적대장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검토와 그를 토대로 호적대장에 반영된 조선의 호구정책의 여러 양상들을 구명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³⁾ 그 결과 호적대장 작성은 부세수취에 그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호적대장의 호구과약 역시 조선의 부세정책의 결과물로 해석되었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여성과약 역시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⁴⁾

그런데 조선의 호구정책은 대한제국기와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일제시기에는 일본 호적법의 일부가 식민지 조선에 도입됨으로써 호구의 파악방식 및 그 목적이 조선과는 매우 달랐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민적법, 조선호적령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호적제도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호적법의 원리에 따라 조선인을 가족 단위로 조직화하고 이를 호적에 등록케 함으로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개개인에 대한 법적 지배를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기재는 그가 속한 家의 호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⁵⁾ 따라서 일본식 호적법의 도입으로 인한 호구과약방식 변화의 중심은 호주상속제였다. 또한 새로운 호적제도하에서 호주는 혼인, 입양, 입적, 제적과 같은 호내구성원의 일체의 신분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가족에 대해 강력한 가부장권을 행사할 수 있게

-
- 1)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현존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다. 김동진,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대정현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 2)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3) 호적대장 연구팀,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4) 김경란, 「朝鮮後期 『丹城縣戶籍大帳』의 女性把握實態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 5) 홍양희, 「植民地時期 戶籍制度와 家族制度의 變容」, 『史學研究』 79, 2005.

되었던 것이다.⁶⁾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대한제국기, 일제시기의 호구정책의 변화를 여성과약, 특히 여성에 의한 호주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식의 호적법 도입이 가부장적인 요소의 강화로 나타났다면 이는 단적으로 여성과약에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종래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이하 단성호적)을 토대로 이루어진 조선후기 여성주호의 성격을⁷⁾ 19세기 濟州 大靜縣 下幕瑟里 戶籍中草에 나타난 그것과 대비해 봄으로써 조선후기 여성주호의 존재에 대한 일반성의 추출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이것과의 비교선상에서 하모슬리의 光武戶籍과 民籍簿에 기재된 여성호주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특히 일제시기 일본의 호적법 도입에 따른 민적부상 여성호주의 성격변화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 호적상 호의 대표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主戶가 일반적이었다.⁸⁾ 또한 조선시대의 주호는 국가에 대해 호의 부세를 책임지는 부세책임자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일제시기와는 대비된다. 이에 비해 일본식 호적법의 도입 이후 호의 대표자는 호주로 지칭되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기의 호적증초에 여성이 호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여성주호’, 일제시기에 작성된 민적부에 여성이 호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여성호주’로 구분하여 지칭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19세기 濟州 戶籍中草에 기재된 女性主戶

조선시대 제주 대정현 하모슬리에서 작성된 호적증초 중 41개 식년의 호적증초가 현존하고 있다. 이 중 10개 식년은 대한제국기의 것이며, 나머지 31개 식년의 호적증초를 통해 19세기 제주도의 호구과약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9세기 하모슬리 호적증초에 기재된 호 중에서 남성주호 및 여성주호가 차지하는 수치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⁹⁾

- 6)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법학』 33-2, 서울대 법학연구소, 1992.
 7) 김경란, 「단성호적에 나타난 여성주호의 기재실태와 성격」,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8) 조선시대 주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다. 김건태,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단성호적을 중심으로」,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戶’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일제시기 民籍簿의 작성과 女性戶主의 성격

〈표 1〉 19세기 하모슬리 호적중초 主戶의 性別구성

연도 주호 성별	연도																
	1800	1807	1809	1812	1816	1819	1822	1825	1828	1831	1834	1837	1840	1843	1846	1849	
남성 주호	수치	70	83	83	89	92	93	98	100	106	148	103	104	103	107	110	115
	%	82	83	81	87	91	91	95	96	96	93	95	97	95	95	96	97
여성 주호	수치	16	17	17	13	9	9	5	4	4	8	5	3	5	6	4	3
	%	18	17	17	13	9	9	5	4	4	5	5	3	5	5	4	3
故代妻		1		2							2	2	1	2	1		
합계		87	100	102	102	101	102	103	104	110	158	110	108	110	114	114	118
연도 주호 성별	연도																
	1852	1855	1858	1861	1864	1867	1870	1873	1876	1879	1882	1885	1888	1891	1894		
남성 주호	수치	119	127	134	134	135	140	142	145	145	144	145	144	144	137		
	%	98	9%	100	100	100	100	98	99	98	99	97	97	97	96	94	
여성 주호	수치	3	2	0	0	0	0	3	1	3	1	5	4	4	6	9	
	%	2	2	0	0	0	0	2	1	2	1	3	3	3	4	6	
故代妻			1					1	1	1	1		1	2			
합계		122	130	134	134	135	140	146	147	149	150	150	150	150	146		

9) 호의 대표자인 주호는 대개 호적대장의 기재양식상 호의 첫머리에 기재되었다. 그런데 주호에게 有故가 있을 경우 第□戶 □□故(代)妻(子)로 기재된 유형이 나타난다. 즉, 원래의 주호였던 남성이 사망하고 그 처나 아들이 호의 첫머리에 기재된 경우이다. 이 중에서 第□戶 □□故(代)妻(이하 故(代)妻)의 양식으로 여성이 호의 첫머리에 기재된 경우 반드시 주호로 보기 어렵다. 주호를 직접 명기하지 않고 호의 첫머리에 기재된 사람을 주호로 하는 호적대장의 기재양식과는 달리 準戶口에는 문서의 마지막에 주호를 明記하였다. 그런데 1681년(숙종7)에 작성된 慶州의 慶州孫氏 가문의 준호구를 보면, 故(代)妻의 형식으로 준호구의 첫머리에 기재된 前주호의 처가 아닌 牽子로서 문서의 중간에 기재된 아들이 문서 마지막에 주호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단성호적에 故(代)妻양식으로 기재된 호 가운데 성년의 아들이 있는 경우 다음 식년의 기재상황을 보면, 사망한 前 주호의 아들이 주호가 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난다. 따라서 故(代)妻양식으로 여성이 호의 첫머리에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의 기재내용만을 가지고 누가 주호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김경란, 앞의 2003 논문).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故(代)妻양식의 경우 여호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다루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하모슬리 호적중초에 기재된 여성주호는 식년 별로 편차가 크다. 19세기 전반기의 경우 전체 호의 17~18% 가량이 여성이 주호로 등재된 호 즉, 女戶로 나타난다. 이후 19세기를 경과하면서 여성주호의 비율은 급격히 낮아졌으며, 19세기 중반의 4개 식년에는 여성주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소 비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

하모슬리의 여성주호 비율은 단성현 호적대장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17세기 후반~18세기 단성호적에 기재된 여호의 비율은 전체호수 중 대체로 5%의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 단성현의 여호 비율이 일정했던 것은 중앙정부의 호구정책의 산물로 이해된다. 여호는 대부분 과부가 주호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여호를 파악할 목적을 가늠케 한다. 과부호를 비롯한 鰥寡孤獨戶는 국가적 구휼대상인 동시에 役부담의 측면에서는 대표적 虛戶로 인식되었다. 중앙정부에서는 구휼대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동시에 이들 허호가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환과고독호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정책을 취하였고, 호적대장 작성과정에서 『鰥寡孤獨成冊』을 작성하여 지역의 大小에 따라 일정한 숫자가 배정되었다. 즉, 여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부호를 비롯한 鰥寡孤獨戶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이 여호 비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있었던 것이다.¹⁰⁾

그런데 제주 대정현의 경우, 하모슬리의 기재만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양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호총, 구총 및 지역자총수 등의 배정은 군현단위로 이루어졌고,¹¹⁾ 여호를 비롯한 환과고독호의 배정 역시 마찬가지로 군현단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里단위인 하모슬리의 기재만으로는 그 실상을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단성현과 마찬가지로 19세기 중반 여호가 줄어드는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여성이 호의 대표자인 주호가 될 수 있는가. 조선후기 여성이 주호가 될 수 있는 법규정은 18세기에 내려진 『甲午式戶籍事目』에서 찾을 수 있다. “과부는 집안일을 주관하더라도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주호로 삼는다.”¹²⁾ 라는 『갑오식호적사목』의 규정은 법제적으로 여성은 戶內에 주호로 삼을 만한 성년의 남자가 없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주호가 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단성호

10) 김경란, 『단성현호적대장』의 ‘女戶’ 편제방식과 의미, 『한국사연구』 126, 2004.

11) 김건태, 앞의 2003 논문.

12) 『甲午式戶籍事目』(奎章閣 12318), “寡婦, 雖主家事, 子若長成, 以其子主戶爲白齊.”

일제시기 民籍簿의 작성과 女性戶主의 성격

적에는 이러한 법규정이 실제로 적용되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¹³⁾ 하모슬리 호적중 초에는 여성주호에 대한 법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작성한 것이 다음의 <표 2>이다.

<표 2> 하모슬리 女戶의 호구성원

연도	호구성원 성년 남성이 기재된 호	성년 남성이 없는 호				불명	합계 (女戶數)
		미성년 남성	기타가족	率口	獨戶		
1800		3	6		7		16
1807		4	6		7		17
1809		5	6		5		16
1812		3	7		3	1	14
1816		1	6		2		9
1819		2	5		1	1	9
1822		3	1	1			5
1825	1	2	1				4
1828		3	1				4
1831		4	3				7
1834	1	1	3				5
1837		2	1				3
1840	1	2	2				5
1843		1	5				6
1846		2	2				4
1849		2	1				3
1852		2	1				3
1855		2					2
1870			2				2
1873			1				1
1876		2	1				3
1879	1	3	1				5
1882		3	1				5
1885	3		1				4
1888	1		3				4
1891	1		5				6
1894		1	5		2		9

<표 2>는 여성이 주호로 등재된 戶의 구성원을 분류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여성이 주호로 등재된 대부분의 호는 주호가 될만한 성년의 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의 아들이나 딸, 며느리(婦), 손녀 등의 기타가족만으로 호가 구성되었거나 여성 1인으로만 구성된 獨

13) 김경란, 앞의 2003 논문.

戶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형태는 단성호적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갑오식호적사목』의 범규정이 단성호적뿐만 아니라 하모슬리 호적중초에도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선후기에 여성이 주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보여준다.

호 내에 성년 남성이 없는 경우로만 제한되는 女戶 성립의 기본 요건은 호적대상 작성시 이들 여호를 왜 편성하는가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세 부과와 주요 단위인 호적대상상의 호는 役부담의 여부와 관련하여 實戶와 虛戶로 구분되어 인식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役을 부담할 성년 남성이 없는 여호의 경우 대표적 허호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여호는 軍役者를 초정할 수 없는 戶라는 측면에서 부세견감의 혜택을 받는 동시에 진흥행정의 일차적 시혜대상이었다. 단성호적에서 여호를 주로 과부·과녀호로 파악했던 것은 환과고독호의 범주에서 이들 호를 인식했던 때문으로 여겨진다.¹⁴⁾

부세수취를 호의 특성에 따라 달리하였던 사실은 제주 호적중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호적중초에는 호의 口數에 따라 大·中·小·殘·獨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19세기 하모슬리 호적중초에는 6개 식년에 호의 등급이 표시되어 있다. 다음은 여호의 등급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주호의 性別에 따른 호의 규모를 구분한 것이다.

〈표 3〉 주호성별에 따른 호의 규모

호의규모	연도 주호성별	1800	1807	1809	1812	1843	1849
		大	남성 3	3	2	3	8
	여성						
中	남성	12	13	15	15	20	29
	여성						
小	남성	40	53	48	42	60	60
	여성	4	3	3		3	2
殘	남성	11	11	16	21	19	11
	여성	5	7	9	10	4	1
獨	남성	3	3	2	1		
	여성	8	7	5	2		
	불명	1		2	8		1
	합계	87	100	102	102	114	118

14) 김경란, 앞의 2004 논문.

<표 3>을 통해 볼 때, 여호는 小·殘·獨戶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특히 잔·독호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호의 등급은 호 내의 口數를 기준으로 나뉘어졌으며, 대호는 대략 10구 이상, 중호는 7~8구, 소호는 4~6구, 잔호는 2~3구, 독호는 주호 1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호의 등급은 제주의 부세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19세기 제주 부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還政 운영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¹⁵⁾ 따라서 대부분 잔·독호로 존재했던 하모슬리 호적중초의 여호는 단성현의 여호와 마찬가지로 환정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호로 파악된다. 또한 여독호의 경우에는 각종 호역의 면제대상이기도 했다.¹⁶⁾

그런데 호에 등급을 두고 이를 매개로 부세수취를 했던 제주의 戶政운영방식으로 인해 여호의 파악방식은 단성현과 제주가 각기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단성현은 주로 과부·과녀라는 명칭을 여성주호의 직역란에 표기했던 것과 달리 제주의 경우 호 자체에 등급을 두고, 여호를 잔·독호를 파악했기 때문에 여성주호의 직역란에 별도로 과부·과녀 등의 명칭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하모슬리 호적중초에 등재된 여호는 그 존립조건 및 부세운영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단성현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호로 삼을 만한 성년의 남성이 없는 경우에 여성이 주호로서 존재하며, 호 내의 미성년의 남성이 성년이 될 경우에는 주호가 남성으로 대체되는 원칙은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인식된다. 또한 이들 여호가 호를 매개로 한 부세운영에서 각종 부담을 견감받는 호로 인식되었다는 사실 역시 조선후기의 여성주호를 부세운영과 관련한 호구정책의 산물로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로 생각된다.

Ⅲ. 대한제국기의 戶口政策과 ‘女戶’의 증감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은 1896년 9월 공표된 ‘戶口調査規則’과 ‘細則’에 기본 원칙이 담겨져 있다. 즉, 실재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모든 세대를 호로 파악하고 호의 대표자를 명기하는 것이 그 기본원칙이었다. 이는 가능한 많은 호를 확보함과 동

15) 허원영,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16) 『減柴節目』, 1824년.

시에 호세 부담자를 법제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조선시대의 각종 부세를 전세와 호세로 단일화하는 재정개혁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¹⁷⁾ 이와 같은 이른바 신호적법의 시행으로 호적제도 자체가 이전과 달라졌으며 동일시기의 호적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기도 하였다.¹⁸⁾

모든 세대를 호로써 파악하고자 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의 원칙은 제주도의 경우, 호수 증가로 이어졌다. 하모슬리의 경우, 대한제국 직전 19세기 후반경의 호수는 150호 가량이었다. 이에 비해 ‘호구조사규칙’이 발효된 직후인 1898년의 광무 호적중초에는 233호가 기재되어 무려 80여 호가 증가되었음을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 1891~ 1907년 하모슬리의 戶數 및 女戶 기재실태

연도	1891	1894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남성주호	144	137	220	215	214	209	195	195	204	205	203	270
여성주호	6	9	13	12	10	10	7	7	7	6	6	30
고대처							2				1	1
합계(戶數)	150	146	233	227	224	219	204	202	211	211	210	301

대한제국기의 호수 증가 양상은 대정현 덕수리 등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호수 증가와 더불어 광무연간에 작성된 제주 호적중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戶當 口數의 감소이다. 19세기 중엽 7명 정도였던 제주의 호당 구수는 광무연간에는 4명선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같은 19세기 제주의 호수 증감 및 호당 구수의 추이는 전국규모의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국규모의 호수와 호당 구수는 19세기 초부터 호당 4.2~4.3명을 유지하며 고정화되었다. 이에 비해 하모슬리 인근에 위치한 제주 대정현 덕수리의 경우를 보면, 1806년에는 호당 구수가 4.2로 전국적

17)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단성배양리와 제주 덕수리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49, 2005.

18)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이 지역별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다.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대장 ‘戶’의 編制 양상—『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중초』(1843~1907)의 분석」, 『역사와 현실』 45, 2002; 손병규, 앞의 2005 논문.

인 양상과 동일하나, 이후로 호수는 광무시기 직전까지 고정적인 반면 구수는 19세기 중엽 이후 7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호구조사규칙’이 발표된 직후 1897년의 덕수리의 호수는 189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호당 구수는 3.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후 광무연간에 걸쳐 덕수리의 호당 구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¹⁹⁾

19세기 및 대한제국기 제주의 호구과약이 전국적인 추이와 달랐던 것은 제주의 부세운영상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19세기 중엽 이후 戶數를 고정시키는 반면 口數를 증대시키는 제주의 호구현상은 토지세의 수취가 적고, 상대적으로 호구에 대한 수취가 발달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토지재원에 비해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재원운영의 비중이 컸던 제주의 부세운영상의 특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호구과약의 치밀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세기에는 호수가 비총제의 적용으로 고정화되었기 때문에, 호수를 고정시키는 대신 구수를 많이 확보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19세기 제주의 호구과약이 전국적인 추이와 다른 양상을 빚어냈던 것이다. 대신 제주도에서는 호마다 부담액수가 일정했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구수의 크기에 따라 부세수취에 차등을 두는 호등제가 실시되기도 하였다.²⁰⁾

그런데 ‘호구조사규칙’ 및 ‘세칙’이 발효된 1897년 제주지역은 호수의 고정적 유지와 구수 과약의 강화에 근거한 기존의 호구과약으로부터 일거에 호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제주지역은 이미 19세기 중엽 두 배 이상의 구수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구조사규칙’ 및 ‘세칙’ 발효 이후 호당 구수를 전국의 평균적 수치에 맞추어 호구를 편성해도 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호구조사규칙’ 및 ‘세칙’에 대한 제주 지역의 대응은 종래 확보하였던 호당 구수를 낮추어 호수를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²¹⁾

이상과 같은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과 그에 따른 제주 지역의 호구과약의 변화 과정에서 여성이 주호인 여호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다시 <표 4>를 보자.

<표 4>를 통해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898년 하모슬리의 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주호인 여호의 수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전체 호수가 146호(1894년)→233호(1897년)로 증가하였지만, 여호는 9호

19) 허원영, 앞의 2005 논문.

20) 손병규, 「한말·일제 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과약—광무호적과 민적부의 비교 분석」, 『대동문화연구』 54, 2006.

21) 손병규, 앞의 2005 논문, 222면 <표 4> 참조.

(1894년)→13호(1987년)로 불과 4호가 늘어났을 뿐이다. 이후 광무연간에 걸쳐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둘째, 대한제국의 호구정책 변화 이후 증가했던 호수가 광무연간에 걸쳐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07년에 이르러 다시 호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여호의 수치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06년(210호)에서 1907년(301호) 사이에 증가된 91호 중 30호가 여호였다는 사실은 여호가 전체호수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두드러진 특징으로 여겨진다.

1907년 여호의 급격한 증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광무 호적증초에 여호가 어떤 형태로 기재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5>를 보자.

<표 5> 광무 호적증초에 나타난 여호의 호구성원

연도	가족구성	성년 남성	미성년 남성	기타 가족	率口	獨戶	합계 (女戶數)
1898			4	7	1	1	13
1899			5	5	1	1	12
1900			3	6		1	10
1901		1	3	5		1	10
1902		1	2	3		1	7
1903			2	4		1	7
1904			2	4		1	7
1905			1	4		1	6
1906			1	4		1	6
1907				11		19	30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1907년 대폭 증가된 여호는 대부분 여성 1인으로 구성된 獨戶의 형태였다. 즉, 1907년 호적증초에 기재된 여호는 30호이며, 그 중 19호가 독호였음을 볼 수 있다. 이전 식년들에서는 독호로 기재된 여호가 1호씩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두드러진 변화로 보여진다.

그런데 주로 독호의 형태로 존재한 1907년의 여호는 앞 식년의 호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1906년의 호적 증초에 기재된 호에서 분호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호를 형성한 것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07년에 기재된 여호는 30호로 1906년에 비해 무려 24호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들 호는 대부분 新戶였다. 즉, 1907년 기재된 30호의 여호 중 23호가 신호였으며, 1906년의 호가 동일하게 이어진 사례는 불과 3호이며, 分戶 사례는 4건에 그

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을 남성이 주호인 호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897년에 새로운 호구정책이 발효된 직후 하모슬리의 호수는 146호(1894년)→233호(1897년)로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의 수는 4호의 증가에 그쳤다. 이때의 호수 증가는 1894년의 호가 2호 또는 3호로 분호됨에 기인한 것이다.²²⁾ 이때 분호된 호는 거의 남성이 주호인 호가 대부분이었다. 즉, 전국규모의 호당 구수보다 3명 이상 많은 구를 확보하였던 제주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새로운 호구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은 호당 구수를 낮추어 기존의 호를 2, 3호 이상 분호함으로써 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주로 남성이 주호인 호로 분호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 성립 직후 대폭 증가하였던 하모슬리의 호수는 이후 광무연간에 걸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통감부 시기가 시작된 직후인 1907년에 다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통감부는 조선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 일련의 법제 개혁에 나섰다. 이들 제반 개혁 중 가장 기초적 작업의 성격을 지닌 것은 인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고, 그 구체적 장치가 호적제도였다. 따라서 통감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 직후인 1907~1909년 전국적인 호구 수의 급증현상이 나타났다. 1907년 하모슬리의 호수 증가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때 하모슬리의 호수 증가는 여호가 절반 가까이를 점하였고, 이들 호는 거의 신호였던 사실도 이미 확인하였다. 1907년 당시의 이러한 양상은 1897년 이후 호구조사규칙 및 세칙의 발효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에 확보한 男口를 分戶함으로써 호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호당 구수가 3.1명 선으로까지 낮아졌고, 이에 따라 더 이상 호당 구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호를 증가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즉, 통감부의 인구정책으로 호수증가에 대한 압박이 다시 심화되자, 이에 대해 제주지역에서는 新戶, 특히 女獨戶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1907년 호수 증가로 인해 대거 늘어난 여호는 1909~1915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적부에서는 대부분 독립호의 위치를 상실하였다. 1907년 30호로 늘어난 여호 중에서 민적부(1909~1915)에 탈락한 호는 25호, 합호된 호는 3호로 나타났다. 즉, 독립호로 존재하지 못하는 사례가 28건이었다. 이는 1907년 통감부의 인구정책으로 호수증가의 압박이 강해짐에 따라 대거 생성시켰던 여호가 1909년 민적법의 시행 이후 민적부상의 호의 존립 여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난

22) 정진영, 앞의 2002 논문.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광무연간의 호적증초에 작성된 여호 역시 호세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던 대한제국의 호구정책의 추이에 따라 나타난 산물로 인식될 수 있다. 1896년 戶口調査規則 공표 이후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의 결과는 지역마다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제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호구운영에 대한 독자성이 강했으며, 거리상 중앙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점 때문에 여전히 조선후기의 방법으로 호구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여호 증감의 원인 및 성격 역시 조선후기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IV. 일본 호적법의 도입과 民籍簿의 女性戶主의 성격

1909년 3월 민적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대한제국기에 발효된 ‘호구조사규칙’이 폐지되고, 새로운 호구기재 양식에 의거한 민적조사가 실시하였다. 이후 민적법은 몇 차례 개정되었고, 1922년 조선후적령의 공표로 귀결되었다.²³⁾

민적법의 시행으로 일본식 家제도, 戶主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일본식 호적제도가 이식·강제됨과 동시에 호주가 가부장으로서 사법상 家の 주재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출생, 사망, 호주 변경, 혼인, 이혼, 양자,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흥, 부적, 이거, 개명 등 호내구성원의 변동에 대한 보고적 신고나 일체의 신분행위가 호주의 관여하에 호주의 명의로 행해지게 되었고, 호주는 家の 주재자임이 법률상으로 선언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 祖孫관계, 기타의 친족관계로서 파악되었던 고유한 종래의 친족적 신분관계는 이들 관계보다 우위·우선의 호주가족관계 속에 포함된 내부관계로서의 의의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호주의 호주권이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권으로 창출되었던 것으로 인식되었다.²⁴⁾ 이를 통해 볼 때 민적법의 시행으로 인한 일본식 호적제도의 핵심은 호주상속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이영미, 「韓國近代戶籍關連法規の制定及び改正過程—民籍法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 6, 日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2004.

24) 박병호, 앞의 1992 논문.

일본의 호적법 도입이 호주상속제를 핵심으로 하는 동시에 가부장제의 강화를 수반하였다는 이해는 실제 민적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고의 분석대상인 여성 호주의 실상은 어떠하였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 호적법의 시행이 실제 민적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자.

제주 남제주군 하모리 사무소에는 1909년 민적법의 시행 이후에 작성된 3권의 민적부가 현존한다. 각각의 민적부는 그 작성시기가 다르며, 그 성격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권의 민적부는 각각 1909~1915년, 1915~1923년, 1923~192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술의 편의상 1909~1915년에 작성된 것을 민적부A, 1915~1923년에 작성된 것을 민적부B, 1923~1925년에 작성된 것을 민적부C로 구분하였다.²⁵⁾

1909년 민적법 시행 직후 그 결과물로 작성된 민적부A는 광무호적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호구를 새롭게 파악하는 한편, 기존의 호를 지속적으로 분호함으로써 호내구성원을 더욱 치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민적법에서는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었다. 입적자의 범위를 거주를 함께하는 생활 단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호주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국한하였다.²⁶⁾ 그러나 광무호적을 대신하여 1909년 새로이 시도된 호구파악방식은 광무호적 단계의 호적파악방식을 답습함으로써 광무호적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민적법의 규정과는 달리 실제 작성된 민적부A는 기존의 광무호적과 같이 ‘居住地主義’의 주민등록형식을 띠고 있었다.²⁷⁾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불명확한 호적사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역 단위의 구획을 명확히 한 후인 1915년 지방행정기관으로 민적사무를 이양하였다. 1915년 민적사무 처리에 관한 조선총독부 훈령 제21호가 그것이다. 나아가 1922년 12월 조선총독부령 제154호로 ‘조선호적령’을 공포하였다. 민적사무에 대한 이 같은 일련의 법령이 제정·시행된 근본적인 원인은 본격적으로 일본의 가족법제를 조선에 도입하려는 것이었다. 認知, 婚姻, 養子緣組 등 신분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일본의 민법에 따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민사령의 개정과 궤를 같이하여 신분

25) 하모리 민적부의 작성시기 및 그 성격에 대해서는 주로 손병규, 앞의 2006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26) 홍양희, 앞의 2005 논문.

27) 손병규, 앞의 2006 논문.

을 공증하는 제도 역시 일본의 호적법을 본보기로 하여 고치고자 하였던 것이다.²⁸⁾

일본의 호적법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려는 이 같은 법령 시행 과정에서 실제 민적부의 기재도 변화가 나타났다. 1915~1923년에 작성된 민적부B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연장자를 호주로 삼아 이전에 분할되었던 호들을 하나의 호로 합戶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 결과 1923년경의 민적부는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호구를 파악하는 ‘本籍地主義’의 호구과약으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1910년대 후반부 이후 작성된 민적부 B, C는 혈연관계 특히 가부장인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구과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식의 호적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적부 A, B, C의 단계별 변화에 유의하면서 본고의 분석대상인 여성호주의 실상은 어떠한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6>을 보자.

<표 6> 하모리 민적부의 여성호주 기재실태

자료	기준연도	남성호주		여성호주		총호수
		수치	비율(%)	수치	비율(%)	
민적부A	1909	270	97.5	7	2.5	259
	1915	277	98.6	4	1.4	281
민적부B	1915	280	98.6	4	1.4	284
	1923	245	96.9	8	3.1	253
민적부C	1923	262	96.0	12	4.0	294
	1925	283	96.3	11	3.7	294

<표 6>은 민적부A, B, C에 기재된 여성호주의 수치 및 비율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같은 단계의 민적부 내에서 여성호주가 생성 또는 소멸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민적부A 단계에서는 7→4호로 3호가 소멸, 민적부B 단계에서는 4→8호로 4호가 새롭게 성립, 민적부C 단계에서는 12→11호로 1호가 소멸되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가부장인 호주를 중심으로 호구를 파악하는 ‘本籍地主義’의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일본식 호적법이 적용되었던 민적부B, C에서 오히려 여성호주의 수치 및

28) 홍양희, 앞의 2005 논문.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호구과약방식 및 성격이 각기 다른 민적부A, B, C 단계에서 여성주호가 성립되거나 소멸되는 이유 및 가부장적인 호구관계를 보여주는 민적부B, C단계에서의 여성호주 증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먼저 전자의 문제를 살펴보자.

<표 7> 하모리 민적부에 등재된 여성호주의 前호주와의 관계 및 女戶 성립요건

前호주와의 관계	여호성립요건	민적부A (1909년)	민적부B (1923년)	민적부C (1923년)
妻	夫 사망	4	2	5
女	父 사망	1	1	1
妹	남자형제	사망	1	1
		분가		2
弟妻	夫兄 사망에 의한 분가	1	1	1
孫妻	一家創立(이혼)			1
符籍寄口	부적호주		1	1
	一家創立			1
新戶	移來	1		
합계		7	8	12

<표 7>은 여성호주의 성립요건을 우선 前호주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민적부A에서는 夫가 사망하여 호주가 된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다. 그런데 호주인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처가 호주 승계를 한 경우 조선시대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이 4호의 가족구성을 보면 여성호주 1인으로 구성된 독호 1건(8통 3호), 미성년의 아들을 포함한 경우가 1건(11통 5호)이다. 나머지 기타가족을 포함한 경우가 2건(16통 7호, 27통 2호)이다. 그런데 딸, 손녀 등의 기타가족을 포함하고 있는 여호를 보면 특징적인 사실이 발견된다.

먼저 16통 7호의 경우를 보면, 夫가 사망한 이후 妻인 허명구가 호주승계를 하고 호내구성원으로 사망한 3남의 딸, 즉 손녀들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1906년 광무 호적중초에는 허명구와 그 손녀들은 장남(정기함)의 호내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민적부A에는 장남과 차남이 독립호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명구와 그 손녀들은 별도로 여호를 구성하였다. 민적부B에서는 허명구가 손녀들과 함께 장남(정기함)의 호에 합호되었다.

27통 2호의 경우, 夫가 사망한 이후 妻인 오기동이 호주승계를 하고 미혼의 두

딸을 호내구성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역시 아들 김입생(13통 2호)은 분가하여 독립호를 구성하였다. 1914년 오기동이 사망한 후 장녀는 혼인으로 호거되었고, 나머지 미혼의 딸이 호주승계를 하지 않고 오기동의 아들 김입생의 호로 합호되었다.

위의 두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점은 먼저, 호주인 夫가 사망한 후 호주승계를 한 아들의 직계친속이 아닌 가족이 있는 경우, 이를테면 미혼의 딸이나 사망한 아들소생의 손녀가 있는 경우 母가 별도로 호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즉, 새로 호주가 된 아들에게 미혼의 동생이나 조카는 직계친속이 아니기 때문에 母가 이들과 별도로 호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민적부A 단계에서 기존의 호를 지속적으로 분호하는 경향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 호적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다음으로 위 사례의 민적부B 단계의 변화의 공통성은 戶의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민적부B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남성 연장자를 호주로 삼아 이전에 분할되었던 호들을 하나의 호로 戶하는 경향이었고 여호의 경우에도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민적부B에서는 합호가 큰 경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방계친인척은 꾸준히 분가시키고 있었다.

여호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표 7>에서 볼 수 있는 민적부B의 특징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前호주였던 남자형제로부터 분가하거나 남자형제가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를 했다는 점이다. 먼저 남자형제로부터 분가하는 사례 2건을 살펴 보면, 사례 하나는 11통 6호 김병생의 경우로, 夫가 사망한 후 미성년의 아들, 딸과 함께 남자형제의 호에 합호되었다가 다시 민적부B에서 분가하였다. 또 하나의 사례(7통 2호)는 역시 이혼 후 남자형제의 호에 妹로 기재되었다가 민적부B에서 분가하여 독호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결혼을 한 여성이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본가의 복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자형제가 사망하여 호주승계를 한 사례(24통 6호)는 남자형제와 단 둘이 호를 구성하였다가 남자형제가 사망한 후 독호를 형성한 것이다. 이때 호주를 승계한 여성은 미혼의 여성이었다. 미혼여성호주의 존재가 확인되는 셈이다. 조선시대의 주호는 남녀를 불문하고 혼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호적대상의 호는 『經國大典』 戶口式의 규정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부부와 술거자녀 및 노비를 기본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호를 구성하는 조건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미혼여성호주는 존재하기 어려웠으며, 일제 초기에는 관습조사를 시행할 당시에도 이러한 조선의 관습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²⁹⁾ 그러나 1924년 합흥지방법

원의 판사회답을 보면 미혼여성도 그 家에 호주가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호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³⁰⁾

둘째, 附籍寄口의 호주화의 사례가 보인다. 1909년 민적법이 시행되었을 때 독자적인 호를 구성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을 설치하고 이들에 대한 파악과 보호를 주인 호에 맡겼다. 그런데 부적에 등재되었던 자들이 1915년 민적부B를 작성하면서 독립호를 구성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³¹⁾ 부적으로 기재되었던 여성도 독립호를 구성하는 사례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민적부B에서는 남성 연장자를 중심으로 한 합호, 방계의 친인척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분가, 부적자의 호주화가 진행되었는데, 바로 이 때문에 여성호주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³²⁾ 결혼한 이후 夫가 사망한 여성 중에서 미성년의 아들만을 두거나 혼자인 경우 친가에 복적되지 않고 별도로 여호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결혼을 하지 않은 방계친의 여성, 이렇다면 미혼의 妹 등은 남자형제의 호에 합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혼을 한 여성을 친가에 복적시키지 않고 별도의 호를 구성케 하는 경향은 민적부C에서도 지속되어 이혼을 한 경우 일가창립이라는 명목을 세워 독립호를 두는 사례도 보인다.

<표 7>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결혼한 여성이 이혼하거나 夫가 사망한 경우 친가의 호적에 복적시키지 않고, ‘분가’, ‘一家創立’의 명목으로 여호를 구성하였다. 둘째, 미혼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민적부B 단계이후 아버지가 사망한 미혼여성은 남자형제의 호에 합호되었다. 단 합호될 방계친척이 없는 경우 독립호를 형성하였고, 이때의 여성호주는 물론 미혼여성이었다. 셋째, 附籍寄口의 호주화 경향에 따라 종래 부적으로 기재되었던 여성이 독립호를 구성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여성호주의 성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호가 소멸되었다. 여성이 호주의 위치가 탈락하는 요건은 1924년 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의 決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호주상속의 개시는 다음의 9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되었다.³³⁾

29) 『慣習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1912.

30) 『朝鮮戶籍規例』 함흥지방법원영흥지청판사회답, 1924.

31) 손병규, 앞의 2006 논문.

32) 손병규, 앞의 2006 논문.

33) 『民事慣習回答彙集』附錄, 朝鮮總督府 中樞院, 1923.

- ① 호주의 사망
- ② 호주의 本家相續
- ③ 養戶主의 罷養
- ④ 女戶主家의 입양
- ⑤ 女戶主家의 남자출생
- ⑥ 女戶主의 出嫁
- ⑦ 女戶主의 去家
- ⑧ 次養子의 남자출생
- ⑨ 次養子가 戶主人 家의 入養

호주상속이 개시되는 9개의 사유 중 ④⑤⑥⑦의 4개의 사유가 여성호주의 소멸에 관한 것이다. 이 중 ④⑤는 여성호주를 대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는 남자가 생긴 경우이다. ⑥의 사유는 미혼여성이 호주였을 때 혼인과 동시에 호가 소멸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혼여성이 호주로 존재하는 실제 사례를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⑦은 호주인 과부가 재혼을 한 경우 호주의 지위에서 탈락하는 것과 동시에 그 호에서 호주상속이 개시됨을 규정한 것이다.

1910년에 작성된 관습조사보고서는 호주상속의 경우를 제사상속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호주상속의 개시원인 역시 호주의 사망과 호주의 본가상속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위의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의 결의는 이를 세분하여 9개 사유로 규정하였고,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³⁴⁾ 따라서 위의 9개 사유는 민적부B, C단계의 호주상속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여성호주에 대한 규정은 이 시기 여성이 호주의 지위에서 탈락하는 사유를 보여줌과 더불어 반대로 여성이 호주가 되는 조건을 보여주기도 한다.

민적법이 남성중심적인 경향성을 띠어가는 1910년 후반 이후에³⁵⁾ 오히려 여성호주의 숫자가 늘어났던 것은 민적부상의 호를 남성중심적으로 재편해 가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다. 즉, 민적부 단계의 여성호주는 부계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인 호에 편입될 여지가 없는 여성들을 편성하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민적부의 여성호주의 모습은 일본의 호적법 도입에 따라 민적부상의 호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그 단면

34) 이상욱, 「일제하 戶主相續慣習法の 정립」, 『법사학연구』 9, 1988.

35) 민적부의 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손병규, 「民籍法の '戶' 규정과 변화—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대동문화연구』 57, 2007 참조.

을 보여주는 것이며, 조선시대의 여성주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였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후기, 대한제국기, 일제시기의 호구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여성에 의한 호주상속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부세책임자인 주호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법적으로 호 내에 성년의 남성이 없는 경우에 존립할 수 있는 제한적, 한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19세기 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중초에도 대체로 관철되어 있었으며, 단성호적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여성이 주호인 ‘女戶’의 파악방식은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단성호적의 경우, 여호는 주로 과부·과녀호로 파악했는데, 이는 여호를 鰥寡孤獨戶의 범주에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제주 호적중초에는 호의 口數에 따라 大·中·小·殘·獨의 등급이 두어졌는데, 여호는 殘·獨戶로 파악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제주의 戶政운영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즉, 호에 등급을 두고 차등적으로 부세수취를 했던 제주의 戶政운영방식으로 인해 여성주호의 직역란에 별도로 과부·과녀 등의 명칭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 잔·독호로 존재했던 하모슬리 호적중초의 여호는 단성현과 마찬가지로 還政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으며, 각종 호역의 면제 대상이기도 했다. 이들 여호가 호를 매개로 한 부세운영에서 각종 부담을 견감받는 호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조선후기의 여성주호를 부세운영과 관련한 호구정책의 산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생각된다.

한편, 1896년 공포된 ‘戶口調查規則’과 ‘細則’ 등 실재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모든 세대를 호로써 파악하고자 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의 원칙은 전국적인 호수 증가로 이어졌고, 제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호수 증가와 더불어 광무연간에 작성된 제주중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호당 구수의 감소이다. 19세기 중엽 7명 정도였던 제주의 호당 구수는 광무연간에는 4명 선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에 대한 제주 지역의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호구조사규칙’ 및 ‘세칙’이 공포된 이후 1897년 제주 호적중초의 호수증가는 종래 확보하였던 호당 구수를 낮추어 기존의 호를 2, 3호 이상 분호함으로써 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주로 남성이 주호인 호를 분호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한제국 성립 직후 대폭 증가하였던 하모슬리의 호수는 이후 광무연간에 걸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통감부의 인구정책의 시행으로 호수 증가의 압박이 심화된 1907년에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때 하모슬리의 호수 증가는 여호가 절반 가까이를 점하였고, 이들 호는 거의 신호였다. 더 이상 기존에 확보한 男口를 分戶하는 방식으로 호를 증가시킬 수 없게 되자 新戶, 특히 女獨戶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광무연간의 호적중초에 기재된 여호 역시 호세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던 대한제국의 호구정책의 추이에 따라 나타난 산물이었다. 제주의 경우 광무호적도 여전히 조선후기의 방법으로 호구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여호 증감의 원인 및 성격 역시 조선후기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 및 대한제국의 호구정책의 기본틀은 식민지시기에 들어 크게 변화하였다. 1909년 민적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새로운 호구기재 양식에 의거한 민적조사가 실시하였다. 이때 민적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일본 호적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특히 입적자의 범위도 거주를 함께하는 생활단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호주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국한하였다. 그러나 광무호적을 대신하여 1909년 새로이 시도된 호구파악방식은 광무호적 단계의 호적파악방식을 답습함으로써 광무호적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민적법의 규정과는 달리 실제 작성된 민적법 제정 직후 작성된 하모리의 민적부A를 보면 기존의 광무호적과 같이 ‘居住地主義’의 주민등록형식을 띠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불명확한 호적사무를 보완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민적법을 개정하였고, 1922년 ‘조선훈적령’의 공포로 귀결되었다.

민적사무에 대한 이 같은 일련의 법령이 제정·시행된 근본적인 원인은 본격적으로 일본의 가족법제를 조선에 도입하려는 것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호주상속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 민적부의 기재도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1915~1923년에 작성된 민적부B, 1923~1925년에 작성된 민적부C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남성 연장자를 호주로 삼아 이전에 분할되었던 호들을 하나의 호로 合戶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1910년대 후반 이후에 작성된 민적부에서는 혈연관계 특히 가부장인 호주를 중심으로 호구를 파악하는 ‘本籍地主義’로 전환되었던 것

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일본 호적법의 적용과정과 이에 따른 민적부의 단계별 변화에 유의하면서 여성호주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제시기 민적부에 기재된 여성호주는 다음의 몇가지 경우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결혼한 여성이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친가의 호적에 복직시키지 않고, ‘분가’, ‘一家創立’의 명목으로 여호를 구성하였다. 둘째, 미혼여성은 합호될 방계친척이 없는 경우 독립호를 형성하였다. 조선시대와는 달리 미혼여성호주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셋째, 附籍寄口의 호주화 경향에 따라 종래 부적으로 기재되었던 여성이 독립호를 구성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민적부에 여성호주가 존립할 수 있었던 조건을 검토한 결과 일제시기 여성호주는 부계 혈연 중심의 가부장적인 호에 편입될 여지가 없는 여성들을 편성하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적부상의 호가 점차 부계혈연 중심의 가부장적인 호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호주는 생성 또는 소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적부가 남성중심적인 경향성을 띠어가는 1910년 후반 이후에 오히려 여성호주의 숫자가 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여성을 독립된 호주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민적부상의 호를 남성중심적으로 재편해 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었다. 즉, 이러한 민적부의 여성호주의 모습은 일제가 일본의 호적법을 도입함으로써 재편하려 했던 戶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이었는지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또한 일제시기 민적부상의 여성호주는 조선시대의 여성주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였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민적부의 여성호주는 제주 대정현 하모슬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일제시기 여성호주의 일반적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제시기 민적부 및 일제시기 호구자료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일제시기 일본의 호적법 도입과 그에 따른 근대 가족의 형성에 대한 연구가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제시기 호구자료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

• 참고문헌

- 『濟州大靜縣 下幕瑟里 戶籍中草』, 『濟州 下幕里 民籍簿』, 『甲午式戶籍事目』, 『減柴節目』, 『慣習調査報告書』, 『朝鮮戶籍規例』, 『民事慣習回答彙集』
- 호적대장 연구팀,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김건태,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단성호적을 중심으로」,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김정관, 「朝鮮後期 『丹城縣戶籍大帳』의 女性把握實態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단성호적에 나타난 여성주호의 기재실태와 성격」,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_____, 「『단성현호적대장』의 ‘女戶’ 편제방식과 의미」, 『한국사연구』 126, 2004
- 김동진,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대정현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법학』 33-2, 서울대 법학연구소, 1992
-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단성배양리와 제주 덕수리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49, 2005
- _____, 「한말·일제 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과약—광무호적과 민적부의 비교 분석」, 『대동문화연구』 54, 2006
- _____, 「民籍法の ‘戶’ 규정과 변화—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대동문화연구』 57, 2007
- 이상욱, 「일제하 戶主相續慣習法の 정립」, 『법사학연구』 9, 1988
- 이영미, 「韓國近代戶籍關連法規の制定及び改正過程—民籍法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 6, 日本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2004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대장 ‘戶’의 編制 양상—『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

- 중초』(1843~1907)의 분석』, 『역사와 현실』 45, 2002
- _____, 「조선후기 호적 ‘戶’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단성 호적대상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허원영, 「19세기 제주도의 호구와 부세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 홍양희, 「植民地時期 戶籍制度와 家族制度의 變容」, 『史學研究』 79, 2005



Household Register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Characteristics of Female Heads of Household : With emphasis on comparison to Jeju's Household Register and Gwangmu Register from the 19th century

Kim, Kyung-ran

This study examined women's inheritance of household based on changes in household policie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Daehan Empire and the Japanese Colonization. Women could only be registered as the head of household, the taxpayer, in the Joseon Dynasty when there was no adult male in the household. These female heads received various tax deductions. This indicates that female heads were accept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o impose taxes on female-led households. Female heads were also registered on Gwangmu Register of the Daehan Empire for taxation. However, the basic frame of Joseon and Daehan Empire's household policies changed greatly in the Japanese Colonization. When the new Household Register Act was enacted in 1909, household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household declaration form. At that time, the Household Register Act was similar to Japan's Household Register Law. Female heads of household could be registered on Household Register only when they could not be attached to paternal households. Female heads of household tell us many things about Japan's household system which Japan introduced to colonize Joseon. This clearly shows that female heads from the Japanese Colonization had different meaning compared to the female heads from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Female Heads of Household, Household Register,
Household Policies, Household Register Act,
Japan's Household Register